

전자책 대여의 법적 근거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legal basis for e-book lending

이 문 영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창의콘텐츠 학과

Lee, moon-young

Dept. of Creativity Contents, GSCT, Sangmyung University

요약

전자책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속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전자책은 현재 판매와 대여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서비스되고 있는데, 이 서비스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따져본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인 배포권을 가진다. 단, 배포권은 최초 판매의 원칙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된 복제물의 경우 더 이상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미치지 않으며, 이를 최초 판매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최초 판매의 원칙은 도서나 영화 DVD 등과 같은 유형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디지털화되어 유형물 없이 거래되는 저작물은 그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단, 우리나라 법에는 최초 판매의 원칙의 예외로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여권을 부여하고 있다. 예외 조항에 전자책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가 없는 전자책 대여의 맹점에 대해서 고찰토록 하겠다.

I. 서론 - 전자책 대여의 권리 문제

전자책은 종이로 제작된 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자화된 문자, 음성, 화상 등의 정보를 전자 미디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전자출판물을 가리킨다¹⁾.

전자책은 2014년 현재 1500억 규모이며 연평균 12% 성장을 보이고 있다²⁾. 출판업 전체가 0.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전년도에 전자출판 시장은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는데,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전자책은 장르소설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³⁾.

장르소설은 로맨스, 판타지, 무협소설 등의 대중소설의 일종을 가리키는 말이며 이 시장은 본래 도서대여점이라는 유료로 책을 대여해 주는 서적대여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장르소설의 경우 책을 사는 것보다 빌려보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기에 전자책 시장에서도 대여를 판매의 한 메뉴로 만들어 놓게 되었다. 책은 최초 판매의 원칙에 의해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제한되고, 이에 따라 책을 구매한 사람이 대여를 통해서 이득을 취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책은 디지털 저작물로 법적인 정의에 따르면 배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자책을 대여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모순이 된다.

II. 본론 - 용어 정의의 불명확성

1. '대여'의 정의

저작권법 제21조에는 대여권을 정의하고 있다. '저작권

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애초에 책은 '대여권'에 속해 있지 않다. 대여권은 본래 유체물의 이동을 규정한 것으로 무체물로 거래되는 전자책에는 발생할 수 없는 개념이다.

2. '전송'과 '공중송신권'

전자책을 구매 사이트에서 구매자의 전자기기로 다운로드 하는 행위는 '복제·전송'에 속한다. 계약관행에서 '판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인식 하에서 동의하고 있는 것일 뿐 저작권법적인 용어라고 볼 수 없다. 엄밀히 말하자면 '판매'가 아니고 '복제·전송 서비스 사용료 지급'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송권을 신설하였다⁴⁾. 그러나 전송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2조 10항에서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8조의 공중송신권을 통해서 저작물을 복제·전송서비스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전자책의 거래는 이 공중송신에 속한다. 공중송신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2조 7항에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전자책은 공중송신권에 속하는 것으로 유체물과 함께 거래되는 출판물과는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는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도 일치하지 않는다[5].

3. 전자책에서 '대여'와 '구매'의 차이

전자책 판매 사이트들은 장르소설의 경우 대여와 구매로 판매 방식이 나뉘어져 있다. 법적인 정의로 본다면 두 거래방식은 실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송 서비스 사용료의 지급 방식을 계약에 의해 두 가지로 나뉘놓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는 '대여'로 전자책을 사는 경우에는 빌린 것으로 이해하고, '구매'로 전자책을 사는 경우는 책을 소유한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 판매는 영구적인 이용권이고 대여는 일시적인 이용권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면 향후 큰 혼란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Ⅲ. 결론 및 향후 과제

전자책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체들은 전송 서비스료를 대여와 구매에 따라 큰 차이로 만들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판매 가격을 달리 하는 것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이하 도서정가제라 한다)를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 제22조 제3항에서 전자출판물도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대여'나 '전송'에 대한 어떠한 예외 조항도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전자출판물은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 조항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전자책에 대한 용어 정의의 불명확성은 산업 전반에 잘못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루 빨리 정확한 용어들로 정의가 이루어져 시장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정상조 편,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p.733
- [2]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6.1, p.83
- [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5 출판산업 실태조사", 2015.12 p.254
- [4] 고충곤,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저작권법", 지적재산권 제33호, 2009.9 p.73
- [5] 김기태, "저작권", 살림출판사, 2008, p.64